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3. 12. 1.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차주 신용등급 관리체계 강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 산정 시 관련 내규에 따라 본점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등급에 차주의 산업 동향, 모회사 지원능력 등의 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내규상 신용등급 검토 및 심사 업무에 대한 직무분장이 불명확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에 차주의 재무정보 및 업종·지배기업 현황 등이 잘못 반영되는 등 심사부서(여신관리그룹)의 평가 및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등급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규상 영업 부서와 심사 부서 간의 신용등급 산정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차주의 재무정보 및 정성적 요소 등이 적절히 반영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업무보고서 등 보고 강화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에 따라 업무보고서 보고, 본점 검사결과 보고, 본지점 장기차입금 변동 보고 등의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본점 검사 결과를 지연 보고한 사례, 본지점 장기차입금 변동사항 중 상환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보고한 사례가 있는 등 보고 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감독기관 보고의무 사항이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내규 「서울지점 외부 위탁 업무 등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외부 위탁 업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감독당국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내규상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시스템 개발 계약 등과 관련한 위탁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업무위수탁 현황 업무보고서에 갱신되어 계속 중인 계약 등의 보고를 누락한 사례 등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업무위수탁 관련 위탁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업무위수탁 현황에 대한 감독기관 보고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명령 휴가 제도 운영 강화

은행은 내규 「명령 휴가 제도 규정」에 따라 명령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시행 횟수가 내규상 정해진 횟수(연 4회)에 미달하는 등 검사대상기간 중 명령 휴가 시행 인원이 총 직원의 1% 내외에 불과하며,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전일에 통지하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명령 휴가 대상 인원 및 시행 일수 확대,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명령 휴가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개선

은행은 내규 「서울지점 로컬 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의 시스템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직자의 시스템 권한 말소 관련 절차와 기한, 서울지점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보유한 해외지점 아이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한 말소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관련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및 권한 말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파생상품 거래 모니터링 개선

은행은 고객과의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하여 거래주문의 공정성 파악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점검 등을 위해 전화 녹취, 이메일 또는 외부 메신저(로이터 등) 기록을 보관하고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지점과 A지점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최종 계약 조건을 주고 받은 이메일(종목, 거래가격, 수량, 만기 등 거래 필수조건 명시)만을 점검부서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기록·관리하여 사내 메신저를 이용한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호가, 거래 경위 등)은 거래 과정 점검 시 누락된 사례(검사대상기간 중 8건)가 발생하였으며,

본점 및 여타 해외지점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내규 「정보교류 차단제도 내부통제기준」에는 정보교류 차단 예외 범위 및 모니터링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지점 및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다른 지점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주문의 공정성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